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저작권 문화

2014. 08
vol. 240



에어리오 판결의 저작권적 의미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내린 에어리오(Aereo) 판결의 쟁점은 에어리오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을 침해한 것인지였다. 이 판결의 저작권적 의미를 들어본다.



실연의 주체에 대한 판단

에어리오 사건의 쟁점은 에어리오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을 침해하는지였다. 그런데 공연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에어리오 시스템의 구조상 에어리오에게 직접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문제였다. 비록 에어

리오가 시스템을 기획하여 다수 가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전송 받고자 하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서비스 가입자이고, 선택된 특정 방송 프로그램도 가입자의 전용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고, 수신된 방송 프로그램은 일단 가입자 전용 저장 장치에 저장된 후, 가입자에게만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권에 대한 직접 침해자는 서비스 가입자이기 때문에 에어리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기여책임과 같은 간접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서비스 과정에 개입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시중에 나왔을 때 방송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소니 사의 베타맥스 VCR 시판에 대하여 영화사 등은 소니 사의 저작권 침해 기여책임을 주장하였고, 2000년대 초 SIS-DVR인 'Replay TV'를 출시한 Sonic Blue 사에 대한 방송사의 소송에서도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만이 쟁점이 되었다.

에어리오 측은 자신들은 단지 방송을 수신하고 재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조문상 언제 실연(Perform) 또는 전송(Transmit)이 이루어지고, 언제 다른 사람이 실연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것인지 저작권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입법목적의 취

지에서 보면 에어리오는 실연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에어리오 시스템과 과거 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와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그러한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다수 의견은 에어리오 시스템은 언덕 위에 설치된 중앙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개별 가입자 가정에 재전송하던 초기 CATV의 현대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신호를 일괄적으로 수신하여 이를 각 가입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CATV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방송 프로그램만이 그의 전용 안테나와 저장 장치를 통해 수신, 저장되는 에어리오 시스템 간의 기술적 차별성을 그냥 입법목적이라는 일반 기준으로 동일시해도 되는 것인지 법 이론적으로는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케이블 텔레비전과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명백하게 케이블 방송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어서 어느 경우에 케이블 방송과 유사하다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에어리오 측은 대법원에서 에어리오를 케이블 서비스로 보았다면 재전송료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중에 대한 실연(Public) 여부에 대한 판단

변론과정에서 에어리오 측은 개별 가입자에게 스트리밍 전송된 데이터는 개별 가입자에게 할당된 특정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방송 신호의 개인용 복제본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에어리오 가입자들은 각자 개인 폴더와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복제본 프로그램은 오로지 그 개인에게만 전송된다는 것이다. 사실 에어리오 시스템은 2008년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내려진 RS-DVR(Remote-storage-DVR)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건 당사자인 케이블비전(Cablevision)은 이용자들이 셋톱박스와 리모컨을 사용하여 스스로 녹화할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이 녹화된 후 녹화 프로그램의 전송을 요청하면 케이블비전은 서버에 저장된 녹화 데이터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보내 제시청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려 했다. 이 사건에서 제2항소법원은 각각의 RS-DVR 재생의 전송이 단 한 명의 신청자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공중'에 한 실연이 아니며 공연권 침해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리오 대법원은 다수의 유료 이용자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면 그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한다고 해도 공연권의 개념 요소인 '공중'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중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에어리오 판결이 위 케이블비전 판결에서의 공연 개념을 뒤집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에어리오 판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다수 의견은 본 판결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었는지 에어리오 시스템 이외의 다른 종류의 기술,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원격 저장 DVR의 활용이나 출현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리오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의 전달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시금석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에어리오 서비스와 같은 유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규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과거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비즈니스의 모델의 출현에 대하여 무리하게 과거 입법의 목적을 확장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그 허용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